

# South Korean Activities for the classification of Internet Contents and the Public Policies for youth

Choi, Min-sik(Ph. D. In Law)  
Korea Internet Corporations Association

## □ 개요

○ 한국법 상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등급 분류 및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법」,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출판 및 인쇄 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다양함

- 그러나 법령 별 ‘청소년’에 대한 정의조항 및 분류 기준 등이 각각 상이하어 업계의 청소년보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불법콘텐츠 (illegal content)

- ‘금지의 대상’
-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에 대한 유통도 금지
-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의 접근 및 이용도 금지

## 청소년유해콘텐츠 (harmful content)

- ‘관리의 대상’
- 성인에 대한 유통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에 대한 유통은 허용되지  
않음.
- 예)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

- 불법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함.  
이 두 가지 규제가 분리되지 않고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인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
  - 불법콘텐츠 규제수단이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를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됨.  
만약 불법콘텐츠 규제수단이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를 목적으로 활용되면, 불법콘텐츠 규제수단의 본질이 ‘변질’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예) 2005년도의 ‘VOD사건’
  -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수단이 불법콘텐츠 규제의 ‘효과’를 유발해서는 안됨.

## |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 |

-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해서 성인의 접근은 허용하면서도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려면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성인의 접근은 허용하면서 청소년의 접근은 통제할 것인가?
  - 구체적인 통제수단 내지 통제방법에 관한 문제가 등장
  - 오프라인에서는 연령확인, 포장, 구분 및 격리, 표시 등이 적용

- 이러한 수단 내지 방법들에 대한 평가척도
  - 청소년의 접근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서도, 성인의 접근을 과도하게 통제해선 안됨.
  -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된다.”

## |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

- 한국의 등급분류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
  - 예컨대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전등급분류
  - 이러한 등급분류시스템의 기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청소년 보호’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국가 주도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의 틀 내에서 혹은 조화를 전제로 하여 디자인되어야 함.

| |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기본원리 | 청소년 보호와 기타 헌법적 가치와의 조화 |

- 청소년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청소년 및 성인의 일정한 권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됨.



*표현의 자유*

청소년유해콘텐츠 규제는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권(알권리)을 제한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포하고자 하는자의 의사표현의 자유의 제한으로 나타남.



*영업의 자유*

유해콘텐츠 규제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포하고자 하는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게 됨.

- 인터넷의 등장 이후 매체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방식인 정부규제(government regulation)에 대해 그 정당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제기들이 이루어져 왔음.
  - 정부규제의 대안으로 자율규제가 제시되어 왔음.
  - 자율규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은 향후 더욱 더 강조될 것임.예)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게임산업진흥법)

- 청소년보호와 자율규제는 양립 가능함!!  
예)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ütersloh, 2000

컨텐츠 심의제도는 대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제도

만18세  
(&고딩)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

연나이19세

\* 현행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의 '청소년'의 연령기준은 연나이 19세. 즉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문화관련 법률상의 청소년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과 연령기준이 불일치하는 문제



## 실제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더 복잡합니다.

매체종류	기타 매체물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콘텐츠	웹툰	간행물	음반, 음악파일	게임물	영상물		
심의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근거법률	청소년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유형예관한법률,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유형예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유형예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출판및인쇄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연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심의대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매체물 (광고물 등),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규제가 필요한 매체물 등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 (동영상 포함)	만화 형식의 인터넷 정보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만화, 사진첩, 화보류, 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음반, 음악파일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게임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및 선전물
심의형태	사후심의 또는 포괄고시에 따른 포괄규제/청유물심의	방송사업자에 의한 자율적 사전심의 및 방송위원회에 의한 사후심의 / 사후 청유물 고시	사후심의 / 청유물심의	사후심의 / 청유물 심의 (현재 잠정중 단되어 자율 규제중)	사후심의 / 청유물심의	사후심의 / 청유물심의	사전심의 / 등급분류	사전심의 / 등급분류	사전심의 / 등급분류	사후심의
등급분류 및 시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미만 이용불가)	모든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미만 이용불가)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미만 이용불가)	유해간행물(불법표현물) 청소년유해간행물(19세미만 구독불가)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미만 이용불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18세이용가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18세관람가, 제한상영가 (영화에국한)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18세관람가, 제한상영가 (영화에국한)	연소자유해공연물(18세미만 관람불가)

# 관할 부처를 따져보자면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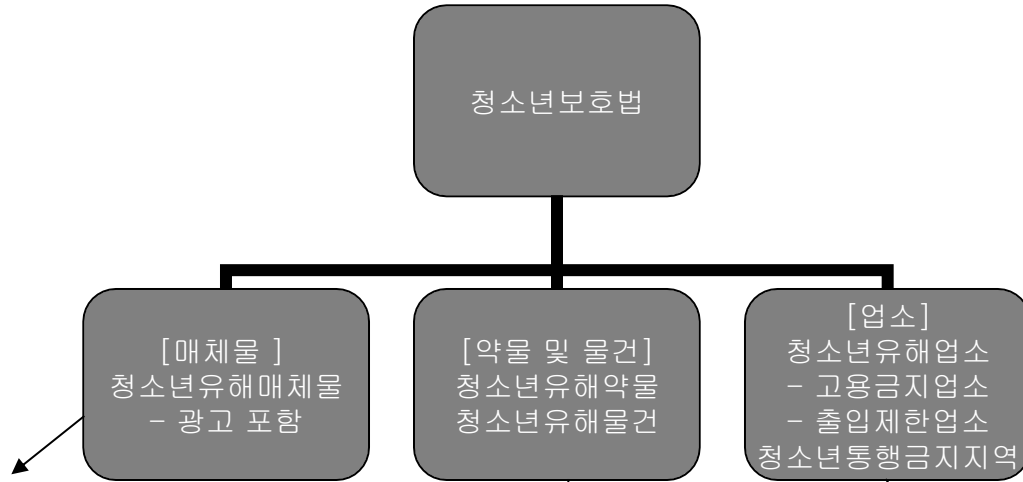
매체종류	여가부	방통위		문화부						
	기타 매체물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콘텐츠	웹툰	간행물	음반, 음악파일	게임물	영상물		
심의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근거법률	청소년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출판및인쇄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연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심의대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매체물 (광고물 등),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규제가 필요한 매체물 등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 (동영상 포함)	만화 형식의 인터넷 정보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만화, 사진첩, 화보류, 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음반, 음악파일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게임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및 선전물
심의형태	사후심의 또는 포괄고시에 따른 포괄규제/청유물심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율적 사전심의 및 방송위원회에 의한 사후심의 / 사후 청유물 고시	사후심의 / 청유물심의	사후심의 / 청유물심의 (현재 잠정중단되어 자율 규제중)	사후심의 / 청유물심의	사후심의/청유물심의	사전심의/등급분류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사전심의/등급분류	사전심의/등급분류	사후심의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미만 이용불가)	모든 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미만 이용불가)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미만 이용불가)	유해간행물(불법표현물) 청소년유해간행물(19세미만 구독불가)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미만 이용불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18세이용가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18세관람가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18세관람가, 제한상영가 (영화에 국한)	연소자유해공연물(18세미만 관람불가)

# 그런데 정보법이 규제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 청소년보호법의 범위

매체종류	기타 매체물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콘텐츠	웹툰	간행물	음반, 음악파일	게임물	영상물		
심의기관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근거법률	청소년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출판및인쇄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연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심의대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매체물 (광고물 등),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규제가 필요한 매체물 등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	공개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 (동영상 포함)	만화 형식의 인터넷 정보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만화, 사진첩, 화보류, 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음반, 음악파일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게임물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및 선전물
심의형태	사후심의 또는 포괄고시에 따른 포괄규제/청유물심의	방송사업자에 의한 자율적 사전심의 및 방송위원회에 의한 사후심의 / 사후 청유물 고시	사후심의 / 청유물심의	사후심의 / 청유물심의 (현재 잠정중단되어 자율 규제중)	사후심의 / 청유물심의	사후심의 / 청유물심의	사전심의 / 등급분류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사전심의 / 등급분류	사전심의 / 등급분류	사후심의
등급분류 및 표시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미만 이용불가)	모든 연령시청가, 7세이상시청가, 12세이상시청가, 19세이상시청가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미만 이용불가)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미만 이용불가)	유해간행물(불법표현물) 청소년유해간행물(19세미만 구독불가)	청소년유해매체물(19세미만 이용불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18세이용가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18세관람가, 제한상영가 (영화에 국한)	전체관람가, 12세관람가, 15세관람가, 18세관람가, 제한상영가 (영화에 국한)	연소자유해공연물(18세미만 관람불가)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종류

### ○ 고시청유물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 특정고시(포괄고시) 청유물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매체물

### ○ 자율표시 청유물

청소년보호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 중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최종결정이 있기 전까지의 매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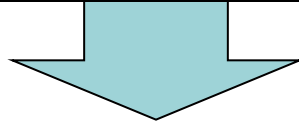


## 청소년보호법의 매체물 범위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 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아직 판단이 미숙한 청소년의 정서를 보호한다는 **가치**
- 청소년을 보호하되, 표현의 자유를 해치고 창작을 저해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철학**
- 심의기관이나 심의위원회에 따른 편차나 표적심의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원칙**



### [자율규제와 조화를 이루는 저비용 고효율 콘텐츠 진흥형 방식]

- “청소년 판매/제공금지”를 제외한 청유물 규제를 모두 푼다. 표시의무도 자율성을 보장한다. 현재와 같은 양벌규정의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벌로 전환한다.
- 광고 규제도 매체별 편차 없이, 온오프라인 차별 없이, 등급분류물과 청유물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 현재 각 심의기관의 기능을 모두 **문화부 산하 ‘정보위(또는 매체위)’**로 통합한다. 이 기구의 목적은 ‘관리 감독’, ‘자율규제 촉진’이지 ‘심의’가 되어서는 안된다.
- 제작유통자가 청유물 여부 결정, 매체별 사업자협의회 등을 통해 정보위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자협은 정보책임자 사업을 함께 하며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 기준”, “윤리강령” 등을 공표, 관리한다.
- 정보위는 통보된 리스트의 관리와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 유통자의 확인과 학부모 지도에 정보제공을 한다. 등급분류 받지 않았고 사업자협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와 사업자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심의한다.